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	처리기간 3개월

신청기관	기관명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
	전화번호	
	설립 근거	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. 사업계획서 3. 시설명세서 4.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. 지정업무 규정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및 심의	→	결재	→	지정기관 지정서 발급
신청인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